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무집행방해죄 법정형 상향〉

■ 이종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415호)

2026. 7.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심 정 희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3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4
가. 공무집행방해죄 개관	4
나. 결과적 가중범 개관	7
다. 법정형의 헌법적 기준 개관	8
라. 검토의견	9
참고자료: 「형법」상 결과적 가중범 법정형	14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이종배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2025. 7. 10.
3. 회 부 일: 2025. 7.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보호함으로써 국가의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공무원 개인의 안전과 존엄성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음. 그러나 경찰, 소방관 등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위하여 공헌하고 있는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폭행이나 위협, 폭언 등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

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법정형을 상향해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6조 및 제144조).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개정안은 i)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 수준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안 제136조), ii)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의 처벌 수준을 치사의 경우 현행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치사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각각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44조 제2항).

현행	개정안
第136條(公務執行妨害) ① 職務를執行하는 公務員에 對하여 暴行 또는 脅迫한 者は 5年 以下の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 公務員에 對하여 그 職務上의 行爲를 強要 또는 阻止하거나 그 職을 辭退하게 할 目的으로 暴行 또는 脅迫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第144條(特殊公務妨害) ① 團體 또는 多衆의 威力을 보이거나 危險한 物件을 携帶하여 第136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

<u>條, 第138條와 第140條 乃至 前條의 罪를 犯한 때에는 各條에 定한 刑의 2分の 1까지 加重한다.</u>	<u>조, 제138조와 제140조부터 제143조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 조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u>
<u>② 第1項의 罪를 犯하여 公務員을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3年 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懲役に 處한다.</u>	<u>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u>

개정안은 공무집행방해죄, 폭행·협박 특수공무방해죄¹⁾ 및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의 처벌 수준을 상향함으로써 국가 및 공공단체의 기능과 법 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가. 공무집행방해죄 개관

「형법」 제136조제1항에서 정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공무방해에 관한 죄(제2편제8장)의 기본적인 구성요건임. 그 외에

1) 공무집행방해죄의 상한을 상향함에 따라, 본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중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경우'의 처벌 수준도 함께 상향됨(현행 제144조제1항).

다른 공무방해에 관한 죄는 행위태양이 다른 수정적 구성요건²⁾이나, 특수한 공무를 보호하거나 특별한 물건을 행위객체로 하는 특별구성요건³⁾에 해당함.

독일 형법은 ‘공무집행공무원에 대한 저항’이란 죄명으로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에 폭행 또는 폭행을 고지한 협박에 의하여 저항한 행위와 공무원에 대하여 사실상 공격한 행위를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음.⁴⁾

미국은 연방 법률 18 U.S.C.에서 경찰관 또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저항 및 공무 집행방해에 대하여 규정하여, 단순 폭력은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벌금형에, 피해자 신체와의 직접적 접촉이 있는 경우 등에는 벌금형 또는 8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하도록 하고

2) 직무·사직강요죄(제136조제2항),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제137조)

3) 법정·국회회의장모욕죄(제138조), 인권옹호직무방해죄(제139조), 공무상봉인등무효죄(제140조제1항), 공무상비밀봉합등개봉죄(제140조제2항), 공무상비밀문서등내용탐지죄(제140조제3항),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제140조의2), 공용서류등무효죄(제141조제1항), 공용건조물등과괴죄(제141조제2항), 공무방보관물무효죄(제142조)

4) 「독일 형법」

제113조 (공무집행 공무원에 대한 저항) ① 법률, 법규명령, 판결, 법원의 결정 또는 처분의 집행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연방군 군인에 대하여 그 직무수행 중에 폭행 또는 폭행을 고지한 협박에 의하여 저항하거나 사실상 공격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행위가 특히 중한 경우에는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특히 중한 경우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행위자 또는 기타 범죄참가자가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무기 또는 그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2. 행위자의 폭행에 의하여 피공격자에게 사망 또는 중상해의 위험을 야기한 경우

3. 다른 범죄참가자와 공동으로 범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행위는 직무행위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 행위자가 직무행위를 적법한 것으로 오인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법원은 행위자가 행위 당시 직무행위가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러한 착오가 회피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동조에 의한 형을 작량하여 감경(제49조 제2항)하거나, 책임이 경한 경우에 그 형을 면제할 수 있다. 행위자가 그 착오를 회피할 수 없었고 그가 인식한 정황에 비추어 이의신청을 통하여 추정상의 위법한 직무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도 없었던 경우에는 동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이를 기대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법원은 동조에 의한 형을 작량하여 감경(제49조제2항)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있음.⁵⁾

프랑스 형법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폭력적 저항을 하는 행위를 공무집행저항으로 보고 2년의 구금형 및 30,000유로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음.⁶⁾

일본 형법은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행, 협박을 가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음.⁷⁾

영국은 경찰법(The Police Act 1996)에서 직무수행 중인 경찰관 또는 경찰관의 직무수행을 돕는 자에 대한 폭행, 저항, 방해행위를

5) 「미국 연방 법률」

18 U.S.C. §111 경찰관 또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저항 및 공무집행방해

(a) 일반조항

(1) 18 U.S.C. §1114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찰관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물리력을 동원하여 폭행, 저항, 불응, 방해, 협박을 가하거나

(2) 18 U.S.C. §1114에서 명시하고 있는 전직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물리력을 가해 폭력 또는 협박을 한 자는 본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법행위가 단순 폭력에 해당된다면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금고형(또는 둘 다)에 처하고, 폭행의 피해자의 신체와 직접적인 접촉이 있거나 또는 다른 중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있는 경우 본 조항에 따라 벌금형 또는 8년 이상의 자유형(또는 둘 다)에 처한다.

(b) 가중처벌: 전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자가 흉기(사망 또는 위해를 입힐 수 있으나 결함으로 그렇게 하지 못한 무기 포함)를 사용하거나 또는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본 조항에 따라 벌금형 또는 20년 이상의 자유형(또는 둘 다)에 처한다.

6) 「프랑스 형법」

제433-6조 (공무집행저항) 법률, 공권력의 명령 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영장의 집행을 위하여 직무 수행 중인 공무원 등 공무취급자에 대하여 폭력적인 저항을 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저항을 구성한다.

제433-7조 (집단공무집행저항) ① 공무집행저항은 2년의 구금형 및 3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집단으로 행한 공무집행저항은 3년의 구금형 및 45,000유로의 벌금으로 가중한다.

제433-8조 (특수공무집행저항) ① 무기를 가지고 행하여진 공무집행저항은 5년의 구금형 및 7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집단으로 무기를 가지고 행한 공무집행저항은 10년의 구금형 및 150,000유로의 벌금으로 가중한다.

제433-10조 (공무집행저항 교사) ① 공무집행저항을 직접 교사하는 행위는 환호, 또는 공개적 연설, 게시 또는 배포된 문서 또는 글, 언어 또는 영상 기타의 전달수단에 의하여 표명된 경우 2월의 구금형 및 7,5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문서나 시청각매체에 의한 보도를 수단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유책자의 결정은 언론보도를 규제하는 법률의 특별규정에 의한다.

7) 「일본 형법」

제95조 (공무집행방해 및 직무강요)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게 어떤 처분을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기 위하여 또는 그 직을 사퇴하게 하기 위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도 전항과 같다.

6월 이하의 자유형 또는 5등급의 벌금형⁸⁾으로 처벌하고 있음.⁹⁾

나. 결과적 가중범 개관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의 기본범죄에 의하여 행위자가 예견하지 못했으나 예견할 수 있었던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그 중한 결과를 이유로 형이 가중되는 범죄를 말함.¹⁰⁾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에 내재하는 전형적인 위험이 중한 결과로 현실화되어 그 책임이 무겁다는 점에서 가중처벌하고 있음.¹¹⁾

결과적 가중범은 i) 고의의 기본범죄에 ‘과실’로 중한 결과를 야기한 범죄구성인 진정결과적 가중범(상해치사죄, 폭행치사상죄¹²⁾ 등 대부분의 결과적 가중범)과 ii) 중한 결과가 ‘과실’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되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특수공무 방해치사상죄,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¹³⁾ 등)으로 구분됨.

8) 「영국 양형법」(Sentencing Act 2020) 제122조에 따르면, 5등급 벌금형은 5천파운드(약 1천만원)에 해당

9) 「영국 경찰법」

제89조 경찰관에 대한 폭행

(1) 직무수행 중인 경찰관 또는 경찰관의 직무수행을 돕는 자에 대한 폭행은 유죄이고 즉결재판에 따라 6월 이하의 자유형 또는 5등급의 벌금형(또는 병과)에 처한다.

(2) 고의로 또는 악의를 갖고 경찰관의 직무수행 또는 경찰관의 직무수행을 돕는 자에 저항 또는 악의를 갖고 방해한 자는 유죄이고 즉결심판에 따라 1월 이하의 자유형 또는 3등급의 벌금형(또는 병과)에 처한다.

(3) ~ (6) (생략)

10) 「형법」 제15조(사실의 착오) ②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의 경우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11) 헌법재판소 2018. 7. 26. 선고 2018헌바5 결정례

12) 「형법」

제259조(상해치사)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13)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

다. 법정형의 헌법적 기준 개관

법정형의 입법 분야에서 입법자를 구속하는 헌법상의 지침으로는 비례원칙, 형벌체계 상 정당성과 균형성 및 평등원칙, 명확성원칙을 들 수 있음.¹⁴⁾

i) 비례원칙은 법정형을 포함한 형사입법의 목적과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투입된 수단이 정당해야 한다는 입법목적의 정당성, 입법을 통하여 투입하는 수단이 해당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합해야 한다는 적합성 원칙, 투입하는 수단이 국민에게 가장 피해를 적게 주어야 한다는 필요성 원칙, 입법을 통하여 추구하는 목적의 가치와 법익에 대한 제한의 강도가 비례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균형성 원칙 등을 내용으로 함.¹⁵⁾¹⁶⁾

ii) 형벌체계 상 정당성과 균형성 및 평등원칙¹⁷⁾은 법정형을 가중하는 입법의 경우 그 가중의 정도가 통상의 형사처벌과 비교하여 현저히 형벌체계 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서는 아니되며, 법

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4) 이진국, 합리적 법정형의 입법 방안, NARS정책연구용역보고서, 국회입법조사처, 16쪽

15) 이진국, 앞의 책, 16쪽

16) 형벌의 위협으로부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10조의 요구와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과잉입법금지의 정신에 따라 형벌개별화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의 법정형을 설정하여 실질적 법치국가의 원리를 구현하도록 하여야 하며, 형벌이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적절한 비례성을 지켜야 한다(헌법재판소 2019. 2. 28. 선고 2016헌가13 결정례).

17) 입법취지에서 보아 중벌(重罰)주의로 대처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의 실태와 죄질의 경중, 이에 대한 행위자의 책임, 처벌규정의 보호법익 및 형벌의 범죄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전체 형벌체계상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그러한 유형의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함으로써 입법재판권이 헌법규정이나 헌법상의 제원리에 반하여 자의적으로 행사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헌법에 반한다.(헌법재판소 2019. 2. 28. 선고 2016헌가13 결정례).

의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원칙에 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함.

특히, 형사입법에서는 균형성 원칙이 행위규정과 제재규정 간의 비례관계를 심사대상으로 삼게 되며, 입법자가 신설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범죄구성요건에서 범죄의 성립요건과 그에 대한 법정형이 비례관계에 서 있는지가 균형성 원칙의 심사대상으로 됨.¹⁸⁾ 객관적으로 법정형을 범죄의 추상적 불법성에 비례하게 설정해야 한다는 법정형에 대한 균형성 원칙의 요청에 위반될 경우 책임주의에 위배되어 위헌으로 된다는 실천적 의미를 지니게 됨.¹⁹⁾²⁰⁾

라. 검토의견

공무원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행·협박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공무원집행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지 못하는 문제에 대응하여 공무원집행방해죄의 법정형을 상향함으로써 국가 및 공공단체의 기능을 보호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담보하여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인정됨.

또한,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입법정책적 결정 영역에 속하는 점²¹⁾, 개정안은 법정

18) 이진국, 앞의 글, 23쪽

19) 이진국, 앞의 글, 24쪽

20) 형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하지 아니하고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비례성을 갖추어야 하고(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 전체 형벌체계상 지나치게 가혹하지 아니할 것이 요구되며(형벌체계상의 균형성과 평등원칙), 이에 위반되는 법정형을 규정한 조항은 형벌법규의 법정형에 대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헌법재판소 2019. 2. 28. 선고 2016헌가13 결정례).

21) 헌법재판소는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 선택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뿐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시한 바가 있음(헌법재

형의 상한만을 상향²²⁾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개별 사건의 죄책에 맞는 형을 적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개정안은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다음 사항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첫째, 「형법」에 규정된 구체적 법정형은 개별적인 보호법익에 대한 가치체계를 표현하는 것으로서,²³⁾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방해에 관한 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이라는 점에서, 개정안에 따라 강화하려는 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형 수준이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죄들의 법정형 수준과 비교하여 형벌체계상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형법 제8장 공무집행방해에 관한 죄에 규정된 다른 범죄의 법정형, 특히 현재 공무집행방해죄와 같은 형으로 규정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형법」 제8장 공무집행방해의 죄의 법정형 >

죄명	법정형
공무집행방해(제136조)	5년 이하 징역 / 1천만원 이하 벌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제137조)	5년 이하 징역 / 1천만원 이하 벌금

판소 2011. 5. 26. 2009헌바63 결정).

22) 헌법재판소는 어떤 범죄에 대한 법정형은 법관으로 하여금 구체적 사건의 정상에 따라 행위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선고형을 이끌어낼 수 있게끔 과도하게 넓지 않은 범위에서 되도록 그 폭을 넓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한 바가 있음(헌법재판소 2011. 11. 24. 2011헌바54 결정 참조).

23) 헌법재판소 2011. 6. 30. 선고 2009헌바354 결정례

인권옹호직무방해(제139조)	5년 이하 징역 / 10년 이하 자격정지
공무상비밀표시무효(제140조)	5년 이하 징역 / 700만원 이하 벌금
공무상 보관물의 무효(제142조)	5년 이하 징역 / 700만원 이하 벌금

또한, 특수한 공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이나 군인 등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소방기본법」²⁴⁾, 「군형법」²⁵⁾ 등 특별형법 상 특칙 규정이나 간수 등을 폭행·협박하여 도주함으로써 국가의 구금작용 침해 정도 및 위법성을 이유로 무겁게 처벌하는 「형법」 상 특수도주죄²⁶⁾ 등과의 관계에서도 개정안에 따른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 수준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둘째, 범죄행위를 나타내는 행위규범과 그에 대한 제재규범으로서의 법정형은 일정한 비례관계에 있어야 함.²⁷⁾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와 같이 중한 결과를 이유로 가중하여 처벌하는 결과적 가중범의 경우에도 가중의 정도는 ‘책임’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 요구되며,²⁸⁾ 결과적 가중범은 가중된 책임은 기본범죄에 내재하는 전형적

24) 「소방기본법」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다.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5) 「군형법」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①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군인 또는 제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6) 「형법」

제146조(특수도주) 수용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7) 이진국, 합리적 법정형의 입법 방안, NARS정책연구용역보고서, 국회입법조사처, p.5

인 위험이 현실화되었다는 것에 근거함.²⁹⁾ 개정안에 따라 특수공무 방해치사상죄의 하한을 상향할 경우 치사상의 결과가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로 발생한 경우까지 살인죄³⁰⁾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결과가 되는바, 특수공무방해에 내재하는 치사상의 위험성에 대해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함.³¹⁾

셋째, 개정안에서 벌금형을 7천만원 이하로 한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국회사무처 법제 지침³²⁾ 등에 따라 징역형 1년당 벌금 1천만원 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나, 「형법」은 전반적으로 특정 기준에 따라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개별 죄책의 사정을 고려하고 있는 점, 비재산형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형 1년당 벌금 1천만원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있는 점,³³⁾ 「형법」 상 범죄에 대한 벌금의 최고 법정형은 5천만원인 점³⁴⁾ 등을 감안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28) 이러한 이유로 1995년 「형법」 개정을 통하여 특수공무방해치사상등 결과적가중범을 치상죄와 치사죄로 구분하여 법정형에 차등을 두었음.(1995. 12. 29. 법률 제5057호 형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이유서 참조)

29) 헌법재판소 2018. 7. 26. 선고 2018헌바5 결정례 참조

30)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1) 개정안과 같이 치상의 결과에 대해 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결과적 가중범으로는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죄(제164조제2항), 현주건조물등 일수치사상죄(제173조제3항), 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치사상죄(제301조·제301조의2), 인질치사상죄(제324조의3·제324조의4), 강도치사상(제337조·제338조), 해상강도치사상죄(제340조제2항·제3항)가 있으며, 해당 결과적 가중범들의 기본범죄는 강제추행죄(제298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를 제외하고는 모두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에 하한을 규정한 범죄임.(14쪽 참고자료 참고)

32)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국회사무처지침 제390호, 2022. 1. 20. 전부개정)

33) “이를 범죄의 종류 및 죄질에 따라 가감하도록 하고 있다.”(법제기준과 실제, 2024개정증보판, 국회사무처, 775쪽)

34) 제324조(강요)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95조(벌금의 병과) 제288조부터 제291조까지, 제292조제1항의 죄와 그 미수범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

< 「형법」 상 7년 이하 징역과 관련된 벌금형 >

조문	죄명	징역형	벌금형
제141조제1항	공용서류등무효죄	7년 이하	1천만원 이하
제166조제2항	자기소유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7년 이하	1천만원 이하
제173조의2제2항	업무상과실 폭발성물건파열등 죄	7년 이하	2천만원 이하
제216조	허위유가증권작성죄	7년 이하	3천만원 이하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죄	7년 이하	2천만원 이하
제257조제1항	상해죄	7년 이하	1천만원 이하
제284조	특수협박	7년 이하	1천만원 이하
제303조제1항	업무상위력등 간음죄	7년 이하	3천만원 이하
제309조제2항	출판물 등 허위명예훼손죄	7년 이하	1천5백만원 이하
제362조제1항	장물 취득·알선죄	7년 이하	1천5백만원 이하

정리하면, 공무집행방해죄 및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의 법정형을 강화하여 국가와 공공단체의 기능을 보호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담보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인정되나, 개정안에 따른 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형 수준이 다른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죄들의 법정형 수준과 비교하여 형벌체계상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의 하한을 상향할 경우 치사상의 결과가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 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결과가 되는 점에서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함

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참고 자료]

< 「형법」 상 결과적 가중범의 법정형 >

조문	죄명	법정형	
		결과적 가중범	기본범죄
제164조제2항 전단	현주건조물 방화치상죄	무기, 5년 이상 징역	무기, 3년 이상 징역
제164조제2항 후단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	사형, 무기, 7년 이상 징역	
제172조제2항 전단	폭발성물건 파열치상죄	무기, 3년 이상 징역	1년 이상 징역
제172조제2항 후단	폭발성물건 파열치사죄	사형, 무기, 5년 이상 징역	
제172조의2 제2항 전단	가스·전기등방류치상죄	무기, 3년 이상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제172조의2 제2항 후단	가스·전기등방류치사죄	사형, 무기, 5년 이상 징역	
제173조제3항 전단	가스·전기등 공급방해치상죄	2년 이상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제173조제3항 후단	가스·전기등 공급방해치사죄	무기, 3년 이상 징역	
제177조제2항 전단	현주건조물등 일수치상죄	무기, 5년 이상 징역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제177조제2항 후단	현주건조물등 일수치사죄	사형, 무기, 7년 이상 징역	
제188조 전단	교통방해치상죄	무기, 3년 이상 징역	일반교통방해: 10년 이하 징역,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제188조 후단	교통방해치사죄	무기, 5년 이상 징역	
제194조 전단	먹는 물 혼독치상죄	무기, 3년 이상 징역	먹는 물 혼독: 10년 이하 징역
제194조 후단	먹는 물 혼독치사죄	무기, 5년 이상 징역	
제259조제1항	상해치사	3년 이상 징역	7년 이하 징역, 10년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 벌금
제259조제2항	존속상해치사	무기, 5년 이상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제275조제1항 전단	유기치상	7년 이하 징역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제275조제1항 후단	유기치사	3년 이상 징역	
제275조제2항	존속유기치상	3년 이상 징역	10년 이하 징역,

전단 제275조제2항 후단	존속유기치사	무기, 5년 이상 징역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제281조제1항 전단	체포감금치상	1년 이상 징역	5년 이하 징역, 700만원 이하 벌금
제281조제1항 후단	체포감금치사	3년 이상 징역	
제281조제2항 전단	존속체포감금치상	2년 이상 징역	10년 이하 징역,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제281조제2항 후단	존속체포감금치사	무기, 5년 이상 징역	
제290조제2항	약취·유인·매매·이송 등치상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	미성년자 약취: 10년 이하 징역
제291조제2항	약취·유인·매매·이송 등치사	무기, 5년 이상 징역	
제301조	강간·강제추행·준강간 ·준강제추행치상	무기, 5년 이상 징역	강간죄: 3년 이상 징역 강제추행: 10년 이하 징역,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제301조의2 후단	강간·강제추행·준강간 ·준강제추행치사	무기, 10년 이상 징역	
제324조의3	인질치상	무기, 5년 이상 징역	3년 이상 징역
제324조의4	인질치사	무기, 10년 이상 징역	
제337조	강도치상	무기, 7년 이상 징역	3년 이상 징역
제338조	강도치사	무기, 10년 이상 징역	
제340조제2항	해상강도치상	무기, 10년 이상 징역	무기, 7년 이상 징역
제340조제3항	해상강도치사	사형, 무기징역	
제368조제2항 전단	재물손괴등치상	1년 이상 징역	재물손괴: 3년 이하 징역, 700만원 이하 벌금
제368조제2항 후단	재물손괴등치사	3년 이상 징역	

문 의 처

02)6788-5056